

## 징계처리 관련 정보공개 사항 (「징계처리 관련 정보공개 지침」 제4조)

### 1. 징계제도 관련 정보

구분	내용
1) 징계양정 기준	붙임 1. 징계양정기준
2)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붙임 2.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3) 의무적 고발대상	붙임 3. 의무적 고발대상
4)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붙임 4.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5) 징계위원회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인사위원회 위원장(부원장)</li> <li>- 내부위원 : 인사위원회 위원(원장 임명) 3명</li> <li>- 외부위원 :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4명</li> <li>- 간사 : 인사위원회 간사(기획조정부서장)</li> </ul> </li> <li>○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집 : 원장 또는 위원장 요청</li> <li>- 개회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li> <li>- 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외부위원 1/2이상 참석)</li> </ul> </li> </ul>

### 2. 징계 운영현황

징계처분일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금품·향응 수수현황	고발여부
2021.12.13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	감봉 3개월	해당없음	미고발

## 【붙임 1】 징계양정기준

○ 「인사관리규정」 <별표 5>

###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b>1. 성실의무 위반</b>				
가. 공문서 위·변조, 파기, 망실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나. 허위문서·조사표 작성, 허위 보고, 허위전산입력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다. 시험부정행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라. 근무평정 관련 부정행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마. 감사업무방해 행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바. 예산·회계 관련 비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b>2. 직장이탈 금지 위반</b>				
가. 무단결근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나. 무단이석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b>3. 직무관련 비밀 엄수 위반</b>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b>4. 청렴의무 위반</b>	산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 1>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참조			
<b>5. 품위유지의무 위반</b>				
가. 사기, 강·절도, 강간 등 반윤리사범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나. 직장내·외 성희롱*, 성매매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다. 음주운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경징계	경징계
<b>6.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b>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 제5호의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5호의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말한다.

○ 「인사관리규정」 <별표 5의2>

채용비위 징계양정기준

□ 채용

비위유형	구분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경과실	고의·중과실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sup>1)</sup>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sup>2)</sup> 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sup>3)</sup>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비위유형	구분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임용 전 결격사유 미확인 <sup>4)</sup>		경징계	중징계

- ※ 1. 징계시효(5년) 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때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견책→감봉)  
 2. 위 비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비위유형	구분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sup>5)</sup>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 <sup>6)</sup>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 1) 학력·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 2) 관계 법령, 연구원 직원채용규칙 등 채용 관련 규정상의 채용기준 또는 절차
- 3) 채용공고, 전형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 인원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
-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 징계기준 적용 제외
- 5) 재직자 또는 그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실적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 「인사관리규정」 <별표 6>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3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비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견책의 경우,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로 감경

○ 「산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 3>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비 위 유형	금 액 수 수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 등	강등·해임·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해 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해임·파 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해임·파 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 연구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붙임 2】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인사관리규정」 제38조(징계의 경감 및 가중)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배임 등에 따른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채용비위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유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

### 【붙임 3】 의무적 고발대상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연구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연구원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부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칙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임직원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다. 「공직자윤리법」. 다만, 이 법의 적용은 원장 및 부원장에 한한다.
  - 라.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2. 제1호와 관련된 파견자의 범죄행위

**제4조의1(의무적 고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의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붙임 4】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 산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 제10장 징계위원회

**제54조(징계위원회 설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7>

**제55조(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인사위원회 간사를 징계위원회 간사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 위원은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원장이 임명한다.

④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원장이 위촉하되,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외부징계위원단」을 활용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부연구위원 내지 선임급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⑤ 징계혐의자의 친족, 직근 상급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56조(소집과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원장 또는 징계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의결 시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0>

**제57조(출석의 제한)**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관하여 특정위원과 직접관련이 있을 때에는 동위원의 회의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55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출석요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의결내용의 보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서면으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재심의 요구)** 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